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29.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21호
2.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3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II. 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사립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I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조례에서 사립학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

지침」 등에 따라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는 여전히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지원 정책은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 학생 수 감소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조속히 개선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2. 이송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건의안은 2025년 3월 31일 이숙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621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건의안은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1월 11일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1) 수업료 자율학교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 및 개요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와¹⁾ 같은법 제51조에²⁾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사립학교 진흥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에 재정결함과 특수교육, 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1)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담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조례 제3조제1항은³⁾ 각호에서 교육감이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기관을 ‘사립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제1호)’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2월 22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⁴⁾ 의결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대상을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구성된 것입니다.
 -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 자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립학교 재정의 어려움이 해당 학교에 재학생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발의되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1월 조례 개정·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등의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서도 여전히 해당 학교들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은⁵⁾

3)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4)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0호, 이숙자 의원 등 42명 발의, 2023.10.11. 발의)

5)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2024.3.), 「2024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안)」, 2쪽.

지원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립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를 명시하고,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에서도⁶⁾ 지원 제외 대상에 “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이하 “수업료 자율학교”)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별표 1]과⁷⁾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⁸⁾ 근거하여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춰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할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 내 수업료 자율학교는 학교 설립 유형별로 사립초등

6)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023.6.),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2쪽.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추정항목·추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말한다)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카.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8)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와 국제중학교, 자율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각종학교 일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총 69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⁹⁾

- 다만, 건의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 학교에 목적사업비, 자연재해 예방 또는 피해시설 복구를 비롯한 예외적인 시설사업 예산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1] 시설사업 중 수업료자율학교 지원 가능 대상¹⁰⁾

예외적 지원 대상	내용
① 자연재난(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해 지원 가능	- 자연재난(재해) 범위 1)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자연재난 관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심히 우려되어 시급히 조치될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함)로 보고·확인된 사안
② 재난 등 위해시설 중 1억 원 이상 소요 사업에 대해 학교법인에서 20% 이상 대응투자 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학교법인의 수익이 없을경우 예외적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대응투자 가능	- 재난 등 위해시설 범위 1)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보수보강 2) 재난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심히 우려되어 시급히 조치될 사안으로 본부로 보고·확인된 사안
③ 특별교부금 또는 외부재원에 한하여 시설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비 지원	-
④ 국가시책사업·안전관리사업(내진 보강·석면 해체·드라이비트 해소·샌드위치판넬 제거·정밀점검)에 대해 지원 가능	-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등 수업료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 예산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과 전자칠판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원 등을 포함해 총 704억 8천 1백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4번(학교지원과 작성 자료) 회신 결과

10)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023.6.),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2쪽.

- 그러나 이 중 298억 1천여만원, 전체 지원액의 약 42.3%은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으로, 법령상 의무 이행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수업료 자율학교에 관한 시설비 지원은 같은 기간 총 158억 여 원이 이뤄졌으며,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 등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비 지원에 집중되었습니다.

[표-2] 최근 3년간 수업료 자율학교 재정지원 현황(총괄)¹¹⁾

(단위 : 천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금액	26,393,823	31,600,436	12,487,022	70,481,281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 지원액 제외	16,116,440	21,606,492	2,947,951	40,670,883

주1) 입학준비금, 무상급식비, 저소득층지원 등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제외한 수치임.

주2) 2023년과 2024년은 집행액이고, 2025년은 예산액 기준임.

[표-3] 최근 3년간 수업료 자율학교 재정지원 현황(시설사업비)¹²⁾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계
안전관리(내진보강)	266,731	1,977,592	-	2,244,323
안전관리(석면제거)	1,833,041	1,756,022	-	3,589,063
안전관리(정밀점검)	610,974	561,436	23,461	1,195,871
자연재난(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583,489	-	-	583,489
재난 등 위해시설 해소	1,985,983	-	-	1,985,983
바닥개선(특별교부금)	-	148,000	-	148,000
장애인편의시설(특별교부금)	-	161,000	-	161,000
창호개선(특별교부금)	-	209,000	-	209,000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	4,213,704	100,740	4,314,444
안전관리(샌드위치판넬제거)	-	686,316	684,889	1,371,205
소계	5,280,218	9,713,070	809,090	15,802,378

주) 2023년과 2024년은 집행액이고, 2025년은 예산액 기준임.

11)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4번(학교지원과 작성 자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것임.

12)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4번(학교지원과 작성 자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것임.

2)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 이러한 상황에서 동 건의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수업료 자율학교도 사립 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와 차별 없이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수업료 자율학교의 시설사업비 지원 및 화장실·급식실·잔디운동장 조성 및 개·보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건의안은 학교 교육환경의 질적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여건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학교 기설과 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적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동 건의안이 주장하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립학교 육성·진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정 지원은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하여 충분한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 「교육기본법」 제25조는¹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은¹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제43조는¹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13)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등에 교부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등에 대해 회계 상황 보고 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1991년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¹⁶⁾
 - 더 나아가 해당 판례는 사립학교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 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하여 국가 교육에 있어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 상기한 법령과 판례는 모두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이를 보장함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관리·감독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공교육 투자의 일환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책무로서 시행되는 것이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명제 아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수준과 범위 등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방침 등이 수업료 자율학교라는 사정만으로 시설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6)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사립학교법제55조제58조제1항제4호에관한위헌심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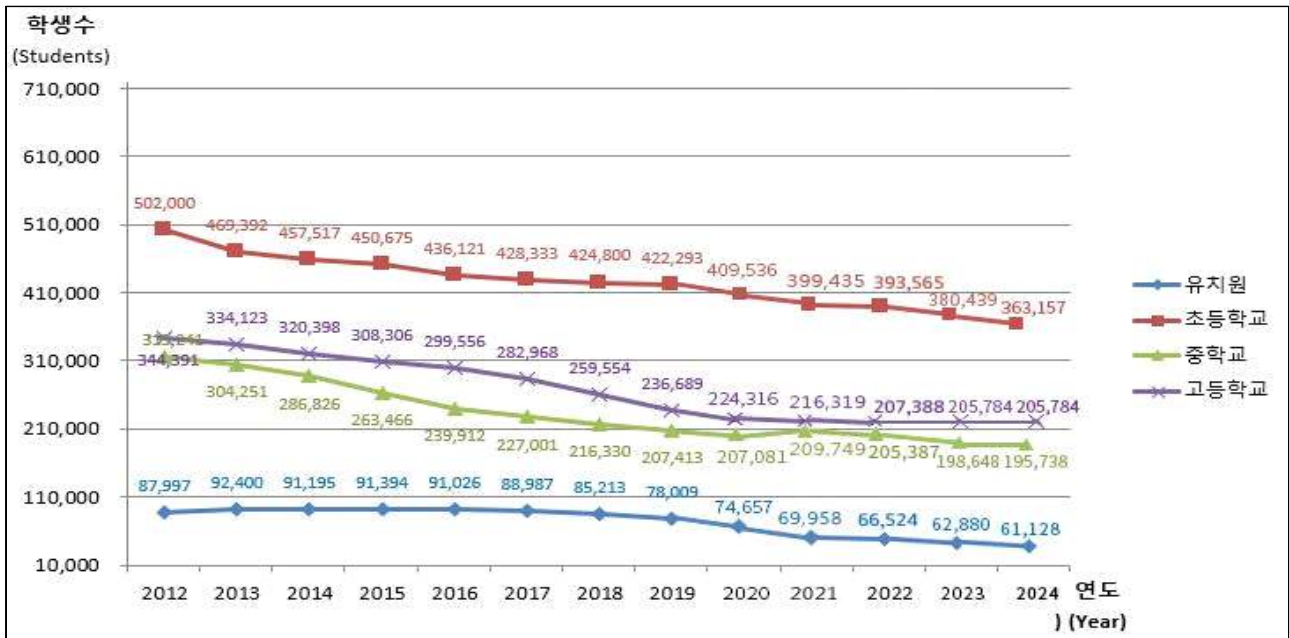
- 지난 2018년,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가 수년간 지속된 학생 결원과 이로 인해 누적된 재정적자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폐교를 통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¹⁷⁾
 - 해당 사안은 수업료 자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기조 장기화와 학교에 대한 선호도 등이 학교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했고, 더 나아가 수업료 자율학교가 수업료 책정에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정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특히, 은혜초등학교의 사례는 저출생이라는 현상이 재정 악화로 이어져 학교가 형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의 저출생 기조와 이로 인한 학교의 폐교 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저출생으로 인한 사립학교의 위기에 대하여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의 초등학생 수는 2014년 45만 7,517명에서 2024년 36만 3,157명으로 9만 4,360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4년 대비 20.6% 감소했고,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 내 사립유치원이 1999년 1,237개교에서 2024년 754개교로 1999년 대비 약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⁸⁾
 - 또한, 2023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장 회의를 소집하여 저출생 대비 사립학교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는데, 학령인구 감소가

17) 유대근 기자(2018.1.1.), 저출산의 역습…서울 사립초 ‘기습 폐교’,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1017030> (검색일 2025-04-21)

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 유초중등통계 > 연도별 학교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53&survSeq=2024&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 (검색일 2025-04-22)

교원 일자리, 재정 비효율화 등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¹⁹⁾

[그림-1] 학생 수 변동현황²⁰⁾



- 제시된 두 통계 등은 향후 사립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상급 학교, 중등 교육과정 단계의 학교들(중·고등학교 등)이 겪을 수 있는 경영상 문제를 예측하게 합니다.
- 더 나아가 이러한 사례와 통계지표는 사립학교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교육과정 내실화 등에 있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외적 여건하에서 경영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림에도 특정 학교가 수업료 자율학교라는 이유로 시설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재정적 어려움 심화로 인한 시설 노후화,

19) 박혜원 기자(2023.12.11.), [단독]초등입학 40만명 깨지자 교육청 칼 빼들었다…‘사립’ 폐교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277798> (검색일 2025-04-21)

20)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 서울교육통계/시각화 > 연도별 통계 변동현황, https://www.sen.go.kr/www/information/statistics/statistics_2/statistics_2024.jsp (검색일 2025-04-21)

학사 운영 부실 등의 피해는 학생과 학교 구성원 등이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자가 전제되는 노후 화장실·냉난방기 등의 개선, 노후 교사(校舍)의 증·개축, 미세먼지 위협에서 학생을 보호할 체육관 건립, 조리종사원의 폐 질환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한 지하 급식실 및 학생 식당 해소 등에 있어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학교를 이유로 특정 사립학교의 시설사업비 등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학교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 구현’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상술한 상황을 종합할 때 동 건의안이 주장하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및 관련 지침 등의 재검토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 등을 갖추고 있는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집행기관 의견에 관한 검토

- 한편, 동 건의안에 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학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제외되고 있어 교육청의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며, 재정 여건 악화로 기존 공사립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²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가 지방 교육행정에 필요한 재원의

21)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크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며, 보통교부금의 규모 산정에 있어 해당 교육지방행정기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은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해당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과 단위,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수업료 자율학교는 해당 시행령 [별표 1]에서 “교부금산정 기준학교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²²⁾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은 “학교”와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에 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재정수요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시행령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교육행정부 등에서 “교부금산정기준학교”만을 기준으로 재정수요를 측정하도록 명문화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비교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말한다)
-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카.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수요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상의 용어 구분

“교부금산정기준학교”가 산정기준인 측정항목 예시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2. 학교 운영비	가. 학교 경비	학교 수	1) <u>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u>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 경비	학급 수	1) <u>교부금산정기준학교</u> 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 경비	학생 수	<u>교부금산정기준학교</u> 의 학생 수
	라. 삭제 <2020. 10.20.>		
	...	...	...

“학교”가 산정기준인 측정항목의 예시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가. 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	건축 연면적	<u>교육부장관이</u> 교육환경 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u>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u> 내 시설의 건축 연면적
5. 교육 기관 등 시설비	...	...	...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 시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료 자율학교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통해 예측한 자체 재정 추계에서는 재정수입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²³⁾

- 다만, 해당 자료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2024년 고교 무상 교육 특례 규정 일몰과 2025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에 따른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23) 서울시교육청(2025), 「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16~18쪽, 23~34쪽을 참조.

[표-5] 2025~2029년 중기 재정수입 총괄(예측)²⁴⁾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증가율
계	73,881,902	13,208,865	14,283,604	14,789,540	15,385,306	16,214,587	5.3
교육비특별회계	66,030,840	11,754,624	12,915,884	13,284,547	13,727,182	14,348,603	5.1
이전수입	64,267,033	11,593,535	12,515,737	12,884,639	13,326,329	13,946,793	4.7
자체수입	670,585	135,853	132,273	133,204	134,149	135,106	△0.1
차입	0	0	0	0	0	0	0.0
기타	1,093,222	25,236	267,874	266,704	266,704	266,704	80.3
내부거래	0	0	0	0	0	0	0.0
기금수입	7,851,062	1,454,241	1,367,720	1,504,993	1,658,124	1,865,984	6.4

○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세입 여건 악화를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중기교육재정계획 상 수입 증가 예측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업료 자율학교의 재정지원이 일괄적으로 제한 되는 상황이 설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24) 위의 자료, 23쪽,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2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절 지원과 감독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고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4981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

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사립 대안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2. 학교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바.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 운영비	학교 수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 수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 수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나. 지방선거경비	지방선거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및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한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수급자 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6)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1) 신설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투자심사 대상 학교는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신설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투자심사 대상 학교는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3) 증설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4) 폐교재산 또는 미활용 학교시설에 신설·이전하는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축·증설 또는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의 건축연면적
		임시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시교실 수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1)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투자심사 대상 학교는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전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신설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투자심사 대상 학교는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전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校舍)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을 교지·교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사립 유치원을 매입·전환하는 방식으로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사립 유치원의 수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바.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건축연면적	1)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임시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시교실 수	
사.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토지면적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1) 공립·사립 유치원 수 2) 공립·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라. 삭제 <2015.10.20.>		
7.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다. 늘봄학교 지원	학급 수	교육부장관이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급 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늘봄학교의 운영을 위해 교실 내 시설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8. 고교무상교육지원	가. 입학금·수업료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학교운영지원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9. 재정결함보전	가. 지방채상환	원리금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	지원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10. 교원연수운영·지원	가. 교원 연수 운영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연수 대상 교원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특별연수 대상 교원 수
	나. 교원 역량 개발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량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수
11. 기초학력보장지원	가. 기초학력 진단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기초학력 보장	학생 수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수
12. 디지털기반	가. 디지털교과서	학생 수 및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이용 학생 수 및 교원 수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교육 성화 원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클라우드 이용 학생 수 및 교원 수
	나. 인프라 구축	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기기의 이용 학생 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 충전설비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13. 학력 인정 평 생 교 육 시설 운 영 지원	가. 인건비	교원 수 및 사무 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소속 교원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소속 사무직원 수
	나. 운영비	평생교육시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

비고

-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측정항목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는 2010년 이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부터 산정한다.
-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학교경비를 산정할 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 4의2. 측정항목 제2호나목의 학급경비를 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학급당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학급의 경우에는 2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 4의3. 측정항목 제2호다목의 학생경비를 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학생 수의 경우에는 2를 곱하여 산정한다.
-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 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교부연도 이전

까지 측정항목 제2호마목에 따른 산정기준에 포함된 횟수가 총 3회 이하인 학교

6. 삭제 <2020. 10. 20.>

7.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 기숙사 운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고등학교

나. 통폐합 기숙학교: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다. 삭제 <2021. 11. 16.>

라. 삭제 <2024. 11. 5.>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해당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전환·증설·개편 계획을 인정받은 고등학교로 한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3)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사.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다음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조 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 경우 학점제 운영에 드는 경비는 제외하고 지원한다.

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특수학교

8.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며,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라. 도서·벽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 학생 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 도서·벽지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경우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9의2.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폐교재산"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의 이전 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9의3. 측정항목 제5호다목에서 "통합·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

를 말하고, "이전 대상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경우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10. 측정항목 제5호나목·라목 및 바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0의2. 측정항목 제5호나목 및 바목의 산정기준에서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11. 측정항목 제5호마목에서 학교 통폐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통폐합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이전·증설·대수선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2. 측정항목 제5호다목 및 마목의 측정단위 중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연면적

나. 기숙사 및 교직원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의 건축연면적

13.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를 통폐합하여 기존 학교 부지 외의 장소로 옮기는 학교를 말한다.

14. 삭제 <2019. 2. 26.>

15. 측정항목 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6.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사립학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사립 중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일 것

나. 이전되는 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을 것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것

17. 측정항목 제5호바목 중 사립학교 이전비는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로 한다.

18.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9.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은 1인당 추가 지원 금액에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곱하여 산정한다.

20. 측정항목 제10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일반연수"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를 말하고, "특별연수"란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연수를 말한다.

21. 측정항목 제12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디지털교과서"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2. 측정항목 제13호의 산정기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1.] [서울특별시조례 제9096호, 2024. 1. 11., 일부개정]

제3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1.] [서울특별시조례 제7772호, 2020. 12. 31., 전부개정]

제2조(징수금액) ① 공립·사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